NYC™

인권

뉴욕 시 인권위원회는 뉴욕 시에서 생활 또는 근무하고 있거나 뉴욕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차별과 싸우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차별 사례를 조사하여 제소하고 있으며 훈련과 공공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별 신고, 교육 요청 또는 인권위원회의 서비스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311로 전화 주시거나 nyc.gov/humanr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BILL DE BLASIO 시장
CARMELYN P. MALALIS 위원장/의장

직장

뉴욕 시에서는, 다음에 근거한 직원, 수습사원 및 구직자의 차별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 연령
- 인종
- 피부색
- 종교/신념
- 국적
- 성별
- 성 정체성
- 임신
- 신체장애
- 성적 취향
- 출인 또는 동거 여부
- 외국인 또는 시민의 신분
- 전과
- 가정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 신분
- 실직 상태
- 신용 기록
- 부양 상태

주거

뉴욕 시에서는, 다음에 근거한 임차인, 집을 구하는 사람 및 주택융자 신청자의 차별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 연령
- 인종
- 피부색
- 종교/신념
- 국적
- 성별
- 성 정체성
- 임신
- 신체장애
- 성적 취향
- 출인 또는 동거 여부
- 외국인 또는 시민의 신분
- 협법적 수입원 (주거 보조금 포함)
- 협법적인 직업
- 자녀 유무 또는
- 가정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 신분

공공 시설

뉴욕 시에서는, 다음에 근거한 상점, 레스토랑, 공원, 도서관 또는 택시와 같은 공공 시설에서의 차별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 연령
- 인종
- 피부색
- 종교/신념
- 국적
- 성별
- 성 정체성
- 임신
- 신체장애
- 성적 취향
- 출인 또는 동거 여부
- 외국인 또는 시민의 신분

또한 법률은 보복, 편견과 관련된 괴롭힘 (사이버 폭력 포함)과 편견에 입각한 프로파일링도 금하고 있습니다.

@NYCCHR